

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8년 2월 22일
- 회부일자 : 2008년 2월 25일

3. 제안이유

-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등의 제도화로 축제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
- 우수축제 육성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,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것임

4. 주요골자

- 지역축제의 정의(제2조)
 - 도내에서 개최되고 시기가 정례적이면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
- 우수축제육성방안(제3조~제7조)
 - 도 지정축제 운영 : 최우수축제, 우수축제, 유망축제
 - 축제의 평가 : 축제평가단 구성·운영, 시군(신청)축제 평가
- 지역축제육성위원회 설치(제8조~제14조) ※ 10인 이내
 - 위원장 : 행정부지사
 - 당연직 : 문화관광환경국장
 - 위촉직 : 도의원, 문화예술·시민사회단체 대표, 축제전문가 등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
- 민선자치 이후 지역축제 개최의 남발로 행정과 재정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
- 그동안 지역축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